

일본, 회사 상대로 한 '발명 소송' 러시

최근 일본에서 사원의 발명에 대해 회사가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계속 나오자 회사를 상대로 한 '발명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기업들은 '업계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 계속된다면 연구기지를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달 3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기억저장장치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한 도시바의 전직 사원이 이 회사에 대해 10억엔(약 1백억원)의 발명대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달 2일 도쿄지법에 제기했다고 한다.

소송 당사자인 마스오카 후지오 도호쿠대학(북경대) 교수는 '재직시 발명품을 회사가 특허 등록해 1천억엔(약 1조원)을 번만큼 발명공로 20%를 인정해 2백억엔을 보상받아야 한다'면서 우선 일부로 10억엔을 청구했다.

그는 전원이 꺼지면 기억내용도 사라지는 종래 기억장치용 반도체의 단점을 보완한 획기적인 '플래시 메모리'를 1980년 발명했다. 비연구직이었던 그는 근무시간 뒤나 휴일 등 개인시간을 이용했으며 87년에는 다시 신형을 개발해냈다.

최근 급신장하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시장은 도시바, 특허권 계약을 맺은 삼성전자 등 2개사가 독점하고 있다. 올해 시장규모는 1조5천억엔(약 15조원). 그가 발명특허권을 회사에 넘기고 받은 보상금은 '자동차 1대 값' 정도로 알려졌다.

마스오카 교수는 2002년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 표지에 '플래시 메모리의 아버지'란 제목으로 소개된 인물. 일본인으로 포브스 표지인물이 된 사람은 그와 최근 2백억엔(약 2천억원)의 발명 대가 판결을 받아낸 청색 다이 오드 발명자 나카무라 슈지(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버라대) 교수 둘뿐이다.

마스오카 교수는 '연구업적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평가를 원한다'면서 '결과적으로 돈을 청구하는 형식이 된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노바스크' 미국 특허소송서 승소 국내 제약업체 불똥 털까 우려

다국적제약사 화이자가 고혈압치료제 베스트셀러 '노바스크(성분명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특허범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닥터레디스에 승소, 국내 제약업체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상소법원은 지난달 말 '닥터레디스의 제네릭 암바즈(암로디핀 말레이트)'가 노바스크에 대한 화이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노바스크 관련 특허가 암바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뉴저지주 뉴와크 지방법원의 지난 2002년 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암로디핀 말레이트로 제네릭 제품 출시를 준비해 온 종근당, 유한양행, SK케미칼, 근화제약, 코오롱제약 등은 긴장감을 드러내면서도 '미국과 국내에 등록·출원된 화이자의 특허내용이 달라 국내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필요하면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암로디핀 말레이트 제조방법 및 조성물을 자체 개발해 특허출원한 종근당은 '화이자 측이 소송을 걸더라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CJ주 등은 베실레이트나 문제가 된 말레이트와 다른 염을 불인 개량신약을 개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선 화이자가 노바스크에 대한 물질특허가 오는 2007년 1월 만료되지만 국내에선 베이스인 암로디핀에 대한 물질특허가 없다. 화이자는 우리나라에 물질특허가 지난 1987년 7월 도입되는 바람에 암로디핀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만 출원, 지난해 특허가 만료됐다.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에 대해서는 제조방법 및 물질특허가 등록돼 오는 2007년과 2010년 만료된다.

화이자는 특히 제네릭 업체들이 암로디핀 말레이트 등으로 노바스크 시장을 잠식해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02년 암로디핀 말레이트에 대한 조성물 특허를 출원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이 암로디핀 말레이트에 대한 조성물특허를 인정해줄지 여부에 국내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특허는 출원 1년 6개월이 지남에 따라 지난해 말 공개된 상태지만 화이자는 아직 특허청에 특허심사청구를 안한 상태이며 심사청구는 출원 5년 안에 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이 특허는 등록이 안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국내사들은 '암로디핀 말레이트에 대해 화이자가 출원한 조성물 특허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에 대한 특허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에 불과하므로 특허등록에 필요한 신규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조성물에 대한 특허 인정을 받으려면 체내 흡수율을 높이거나 하루 3알 복용하던 것을 1알만 복용하게 만드는 등 신규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